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부산·울산·경남·제주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부산·울산·경남·제주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 부산·울산·경남·제주

발 행 일 : 2025년 09월 26일

지 은 이 : 한의정
기 획 자 : 윤강인
디 자 인 : 김지민, 한의정
감 수 자 : 신현정, 박상은

발 행 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7층
대 표 전 화 : 1577-4129
팩 스 : 02-6919-1475
홈 페 이 지 : www.15774129.go.kr
이 메 일 : esky001@kfcpi.or.kr

전 자 책 I S B N : 9791199489615
종 이 책 I S B N : 9791199489660



불법 복제, 무단 전제, 유포, 공유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Contents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부산·울산·경남·제주



공영장례 톺아보기

- 수행 방식 및 지원 예시
- 공영장례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방법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울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경상남도 공영장례 조례

- 본청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조례

- 본청

공영장례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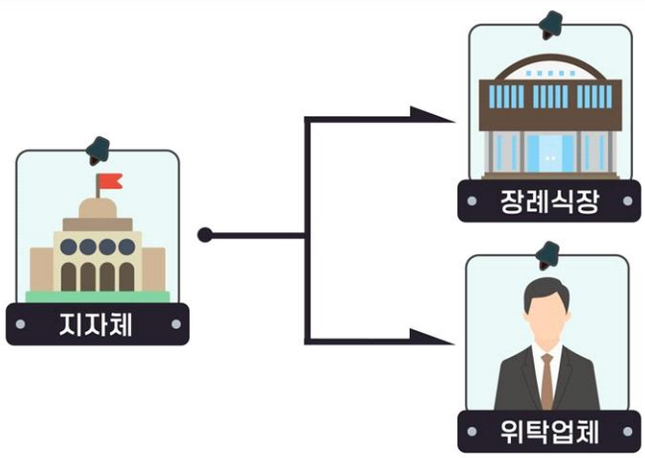


공영장례 톺아보기

공영장례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가 사망했을 때, 시신의 안치부터 염습·입관, 화장과 봉안까지 장사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공공(公共)빈소를 마련하여 장례 의식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지역의 장사 시설 현황, 공설 장사 시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여건에 맞는 장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영장례 조례 확인 방법]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례 수행 방식 및 지원 예시



현재 공영장례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 혹은 의전업체 및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예시



- 장례식장 빈소 또는 제례실 마련
- 근조바구니, 위패, 향, 초, 국화, 병풍 등 장례 의식에 필요한 자원 산정
- 기부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장례의식 준비 및 시행 | 시신 운구 | 조문객 응대 | 현장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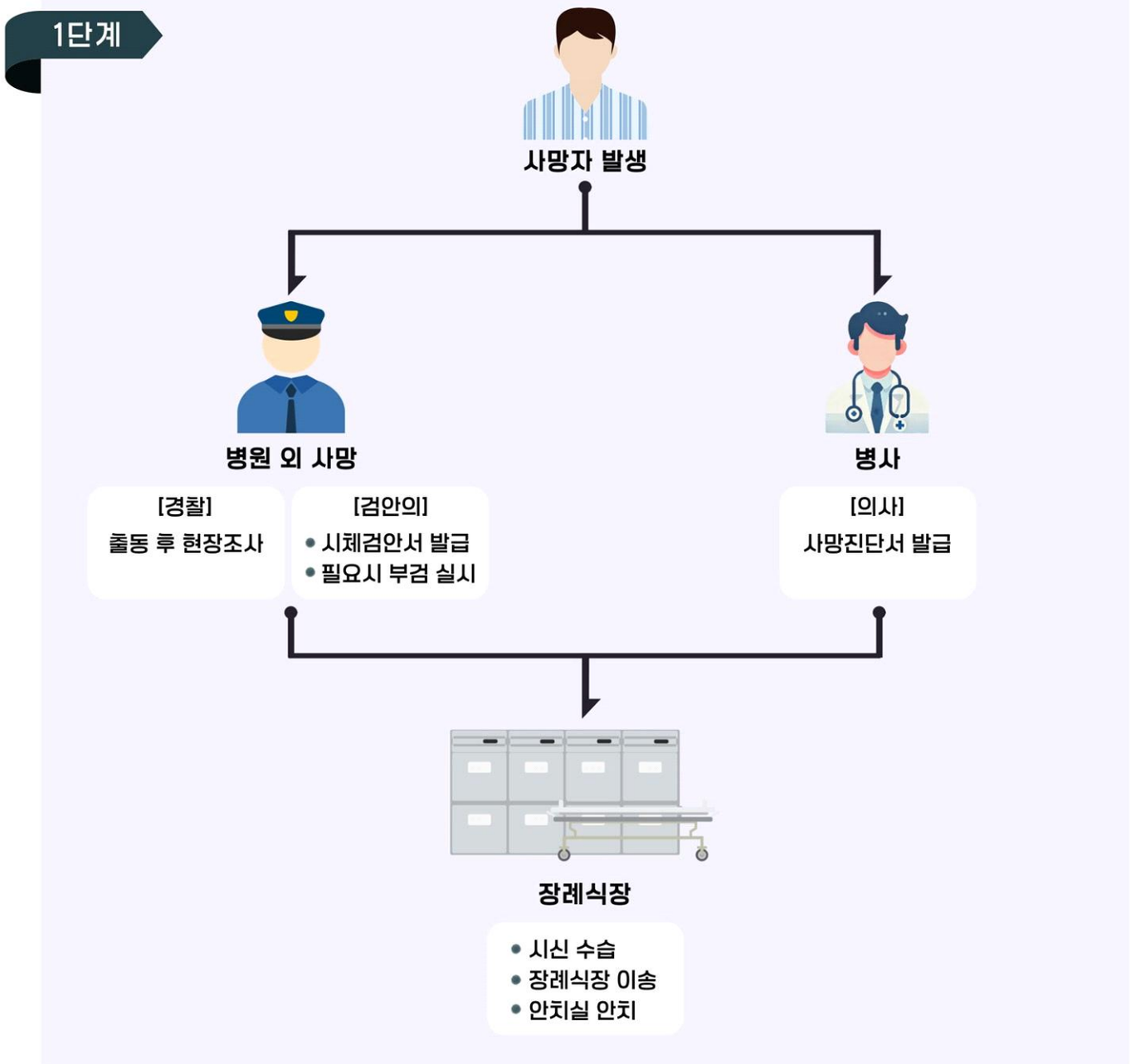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주관자, 상주, 행사 인력 등)은 역할별로 확보하고, 관내 복지기관 및 종교기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자체 인력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고인이 생전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 각 종교별 장례방식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례 방식의 경우, 임종을 지킬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에는 별도 장례절차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지인,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들마저도 그를 충분히 애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공영장례 절차 흐름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내부지침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영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저소득 장례지원의 경우 절차 진행 과정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례 흐름도



2단계

연고자 파악



[경찰]
고인 범죄 여부, 변사자 신원,
유족 등 관계자 확인 후
무연고자인 경우 지자체 이관



[장례식장 담당자]
연고자 연락 불가 시
지자체 연고자 파악 요청



지자체 담당자

- 사망자 서류 등 각종 서류 확인
- 시신 인수 통보 요청 공문 발송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에게 시신 인계



연고자 없음

공적 서류상 연고
관계의 사람 부존재



연고자 알 수 없음

고인 신원 파악 불가
연고자 확인 불가



시신 처리 위임

연고자가
시신처리위임서 제출



시신 인수 기피

연고자가 시신 인수
통보 받은 후
14일간 무응답



의사 확인 불가

연고자 연락두절,
주소지 불명 등
의사 확인 불가

3단계



지자체 담당자

-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
- 위탁업체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등

 공영장례 절차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장례지원 요청 공문 발송

4단계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

- [화장예약]
 e하늘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 화장예약
- [염습 및 입관]
- [장례의식 진행]
 1. 빈소 설치 : 장례식장 혹은 전용 빈소 준비 및 상차림
 2. 장례의식 : 고인 소개 및 장례의식 진행
 3. 조문 및 헌화 : 참여자 조문 및 헌화
 4. 추도 행사 : 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추모의 글 작성
- [발인 및 화장시설로 운구]



화장시설

화장 진행



봉안시설

5년 봉안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 기피한 경우 산분장 혹은 자연장 진행

5단계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

[결과 보고]
무연고 시신 전신 사진, 염습 사진, 입관 사진과 장례 중 취득한 화장증명서(혹은 매장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결과 보고



지자체 담당자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진행
- [연고자에게 통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경우 결과 통보
- [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
- [사망신고 및 유류금품 정리]
 공영장례 절차 완료 시 직권으로 사망신고
 무연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시신 처리 비용 충당, 부족액은 매각대금으로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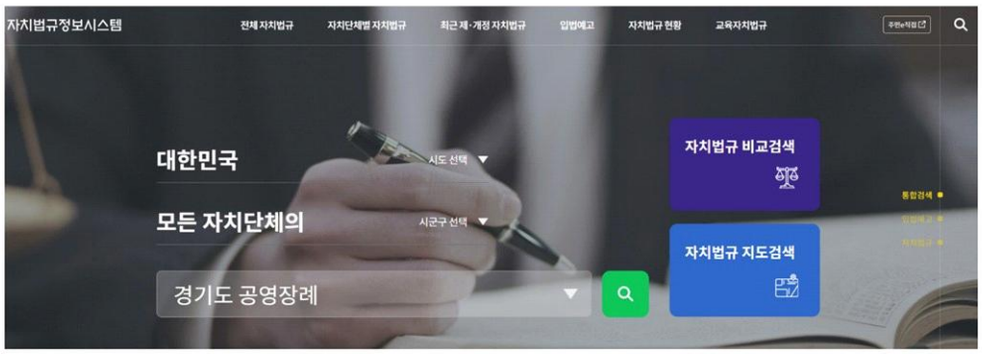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방법



본 도서에 삽입된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하단부에는 [조례 바로가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시, 각 조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되므로, 링크 클릭 후 조례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 확인이 어렵다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해 주세요.
- 검색창에 '00시 공영장례', '00시 무연고'와 같이 원하는 조례명을 검색해 주세요.
- 검색 결과로 제시된 것들 중, 동일한 조례명을 클릭해 주세요.



지자체 문의 및 각 서식 확인 방법



- QR 혹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례명 검색 후 접속
- 조례명 오른쪽 하단의 관리책임부서명, 전화번호 확인



-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례 하단부에 각 양식을 업로드 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명확한 건 각 지자체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BUSAN

(현행, 일부개정) 2023.12.27. 제7151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2.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시장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무연고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로,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2.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3. 시장·구청장·군수는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이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구청장·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 공기업,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3.12.08. 제1431호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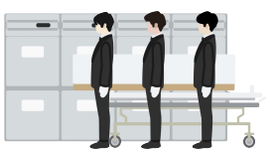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화장 및 봉안



유품정리

2. 유품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품정리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장례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0.07.01. 제129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화장 비용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동장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비영리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일부개정) 2025.08.12. 제1609호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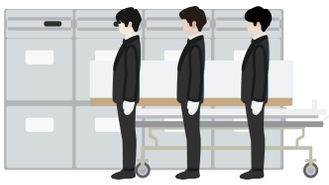
지원대상

공영장례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의 시신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경우
2.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장애인·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은 다음의 장례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시신 검안·운반·안치·염습·운구에 필요한 비용



제례물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화장 및 봉안 비용

2.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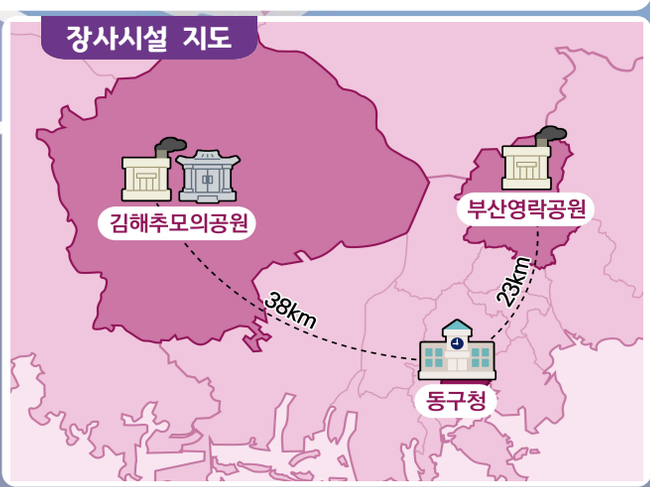
1.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및 성실하게 장례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대상자가 무연고자인 경우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장례의식 수행자를 지정해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0.03.31. 제134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영도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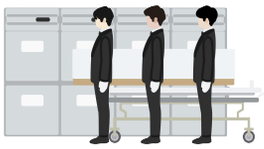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영정사진,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 제6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장례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하단 QR코드 참고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2.10.18. 제14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빈소마련



화장비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연계를 통한 장례지원

2.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동장·이웃주민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전부개정) 2024.09.20. 제1733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장례지원 대상은 동래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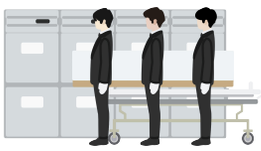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장례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빈소 등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장례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2.10.31. 제150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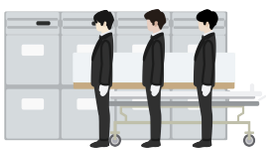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2.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화장 및 봉안



유품 정리

2. 유품 정리를 제외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품 정리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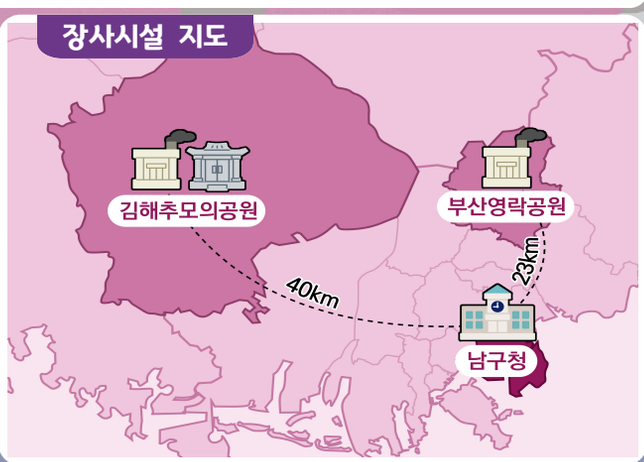
1. 무연고자는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일부개정) 2023.02.01. 제158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유품정리는 북구 거주자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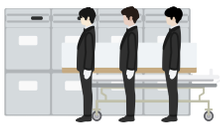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일부개정) 2022.10.20. 제15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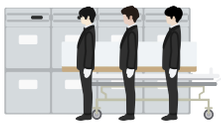
1. 무연고자인 경우
2. 저소득층인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관·상복·염사 등 제례물품, 상차림,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유품 정리 비용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장례의식 실시 등을 이유로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하단 QR코드 참고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2.04.08. 제142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장례지원의 대상은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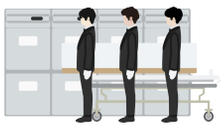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하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의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유품 정리 비용 등

2. 현금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4.01.31. 제158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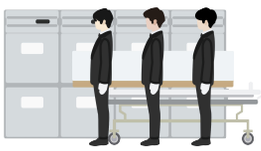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제외)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빈소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무연고 사망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 신청 접수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인 등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신청인 등 장례수행자가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2.27. 제16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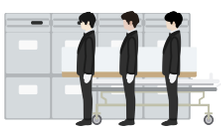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1.12.16. 제10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은 연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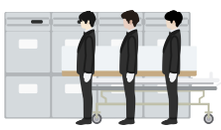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소,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대여품 및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유품 정리 비용 등

2. 현금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은 장례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하단 QR코드 참고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0.12.22. 제1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화장비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동장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비영리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일부개정) 2023.10.10. 제115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용품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동장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19.07.11. 제10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은 기장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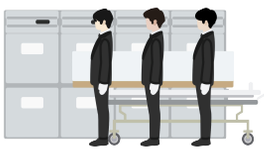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 연계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현금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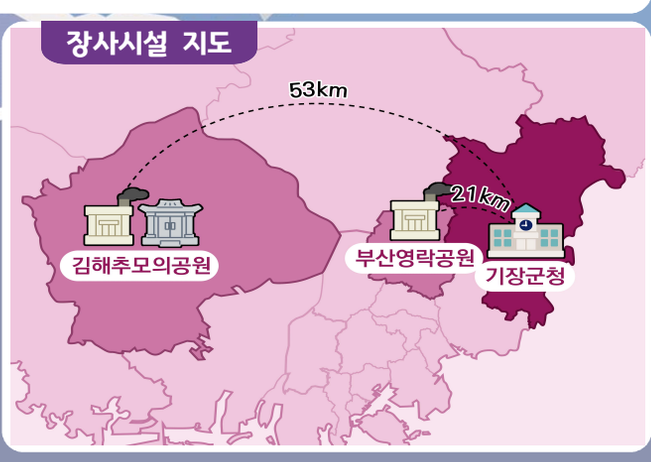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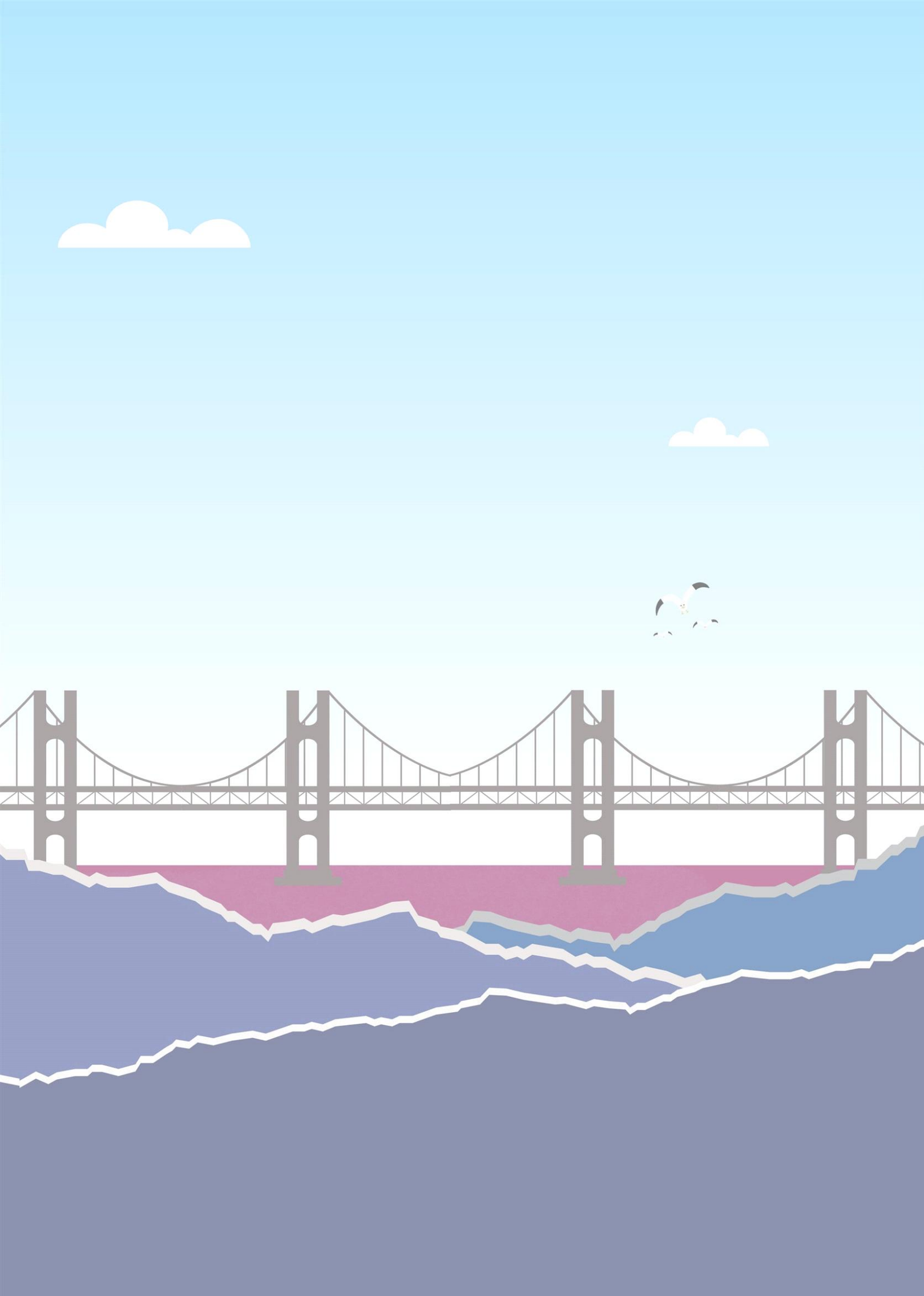
권한의 위임

1.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울산
십리대숲

ULSAN

(현행, 제정) 2021.09.24. 제2460호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망자
3.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구청장·군수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민간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지원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의 대상자는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3. 지원대상 제3호, 제4호 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4.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현행, 일부개정) 2025.08.24. 제140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사망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민간 장례식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4.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의 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3. 지원대상 제3호, 제4호의 대상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 확인 조사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2.27. 제134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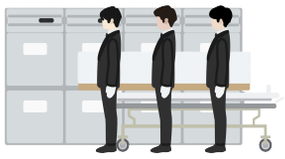
1.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 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2.02.24. 제1114호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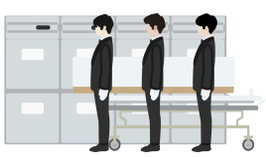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
3.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1인 가구”로서 구청장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이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3.12.21. 제1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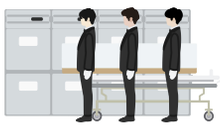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구청장은 다음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09.14. 제14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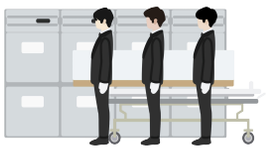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하단 QR코드 참고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경남

GYEONGNAM

(현행, 제정) 2021.08.05. 제5018호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
3.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도지사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현행, 일부개정) 2023.11.15. 제1900호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2.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2.21. 제1962호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1.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장례지원 내용은 장례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비용 등으로 한다.
2. 지원 중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상의 '가', '나', '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
 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신청인·장례업체·비영리단체나 성실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장례를 주관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장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03.15. 제1779호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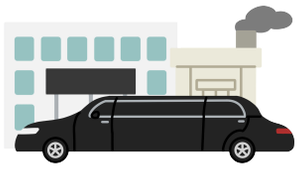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2.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본 조례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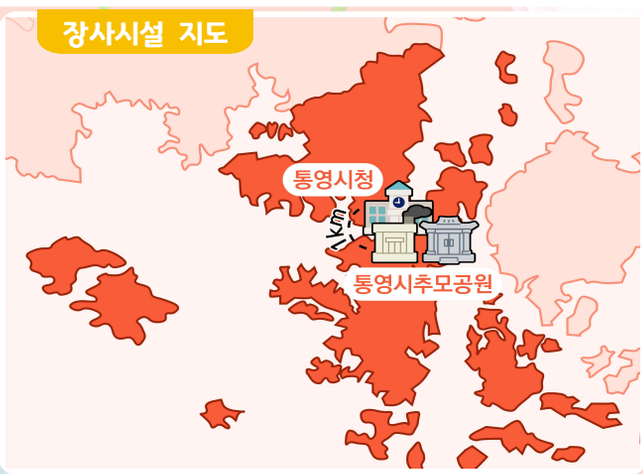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2.21. 제2012호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2. 시장은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금액이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2.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19.02.12. 제1385호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장례지원금액은 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며, 다른 법률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구두로 신청을 하거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두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일부개정) 2023.08.10. 제1642호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장례지원금액은 제1호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며, 다른 법률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4.03.07. 제21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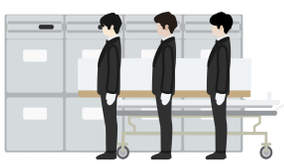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1.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기준으로 다음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사체 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그밖에 장례 의식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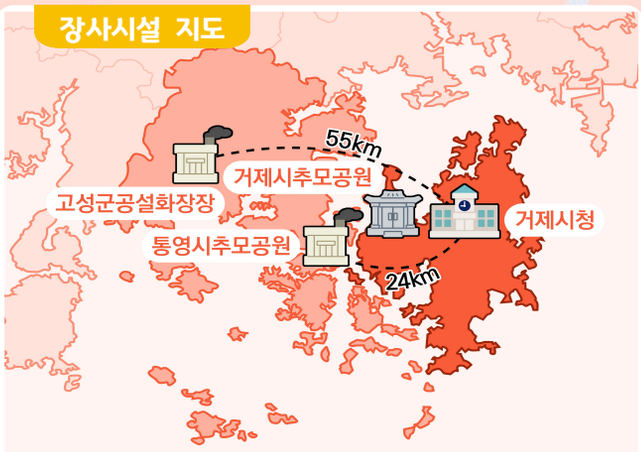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례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장례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 업무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19.12.26. 제1597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일부개정) 2023.12.20. 제2632호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의령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2. 장례지원 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업무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3.11.13. 제2837호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의차량,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상응하는 비용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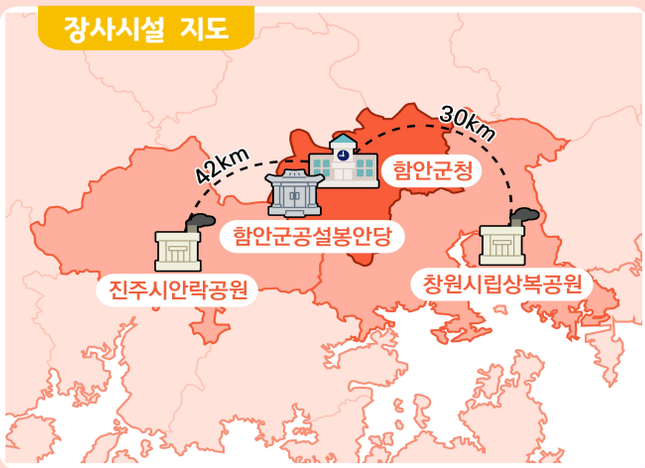
2.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2.28. 제2786호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
 나. 창녕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에 속하는 시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창녕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 제외)를 하는 경우 다음의 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유분함,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나.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다.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
2.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1.09.06. 제2567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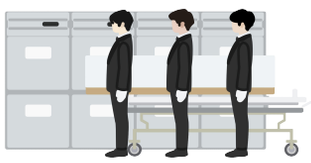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2.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금액이 본 조례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08.16. 제2695호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7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법률,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본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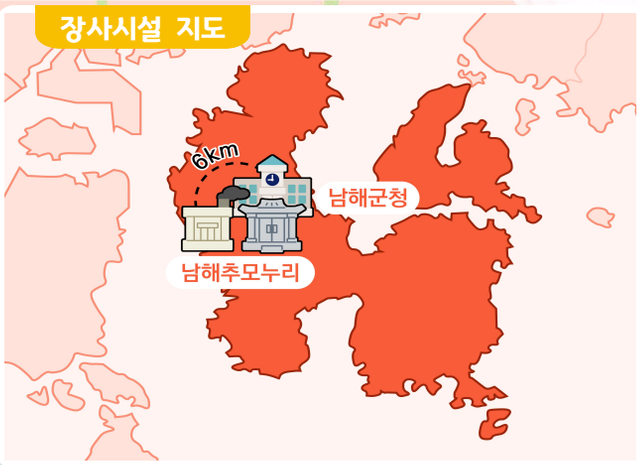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2.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3.05.12. 제256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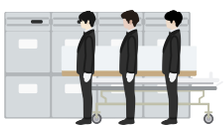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군수는 다음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대여비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원대상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비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하단 QR코드 참고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1.30. 제2714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산청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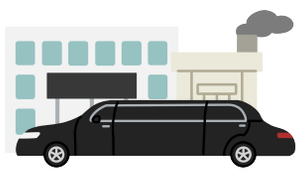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사체 검안비, 안치실 사용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3.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군수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1.23. 제269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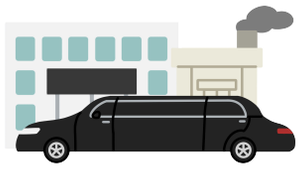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다음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3.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로 한다.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이 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1.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현행, 제정) 2023.11.29. 제2822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거창군에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사시설 지도



조례 바로가기

(현행, 제정) 2023.09.27. 제2729호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망자 및 합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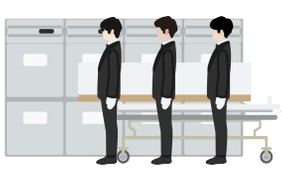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의, 관, 유골함 등 그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 제5조(지원내용) 하단 QR코드 참고

지원신청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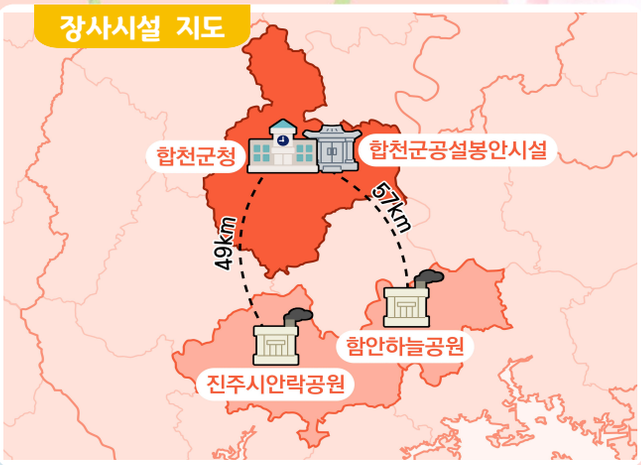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공영장례지원 시신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JEJU

제주



(현행, 일부개정) 2021.07.09. 제2882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신청 및 결정

1.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1.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례 바로가기

장사시설 지도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출처

본 저작물은 2025년 09월 기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각 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를 참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례문화

공영장례 조례집

BUSAN
ULSAN
GYEONGNAM
JEJU

한국장례문화진흥원
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